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특허법인 태백

대한민국 08506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51 이노
플렉스1차 601호

발송일 (일/월/년) 2018년 01월 26일 (26.01.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AOP20170054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7/007834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7년 07월 20일 (20.07.2017)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6월 07일 (07.06.2017)

국제특허분류(IPC)
G06Q 10/04(2012.01)i, G06Q 30/02(2012.01)i, G06F 17/18(2006.01)i

출원인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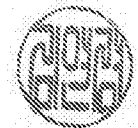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01월 26일 (26.01.2018)

심사관
김연경
전화번호 +82-42-481-3325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6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6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6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JP 2017-027414 A (HITACHI SYSTEMS LTD.) 2017.02.02

D2: KR 10-2016-0036968 A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 2016.04.05

D3: 송태민. ‘패널자료를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09.23.

D4: 조아영 등. ‘심탄도 기반 심장반응과 생활패턴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HCI학회, 2017.02., 페이지 249-252.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

1.1.1 독립항 제1항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심박수, 위치를 포함하는 생체 정보를 취득하는 라이프 로그 센서로 접속해 라이프 로그 정보를 수신하고 (D1의 단락 [0046],[0048] 참조), 라이프 로그 데이터와 운전 거동 데이터와 사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라이프 로그 데이터와 사고 발생 및 그 원인이 되는 운전 거동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며, 상관관계 해석에 따라 얻어진 일정 정도의 상관성이 있는 관계를 이용하고 (D1의 단락 [0086] 참조), 운전 거동에 공통되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 가운데 사고 발생과 강한 인과관계가 있는 데이터 항목의 과부족을 알리는 내용의 주의 정보를 송신하여 휴대 전화 단말의 표시부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주의 정보 출력 방법 (D1의 단락 [0086],[0088], 청구항 7 참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제1항은 라이프로그 데이터에 음성 신호 정보를 포함하고, 변수 조합에 대한 경로 모델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인용문헌 D2의 음성 정보를 포함하는 센싱 정보 (D2의 단락 [0016] 참조), 및 인용문헌 D3의 관측변수들 간에 가정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경로 분석하는 특징 (D3의 페이지 5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착안하여 구성할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수 있습니다. 또한 인용문헌 D1 및 D2는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사람과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인용문헌 D3는 경로분석과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1 내지 D3를 결합하여 청구항 제1항 발명을 도출하는 것은 자명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내지 D3의 결합에 의해서 자명하므로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1.2 종속항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8항

청구항 제2항에 부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생체 정보, 위치, 및 GPS (D1의 단락 [0048],[0070] 참조), 및 인용문헌 D2의 음성 정보 (D2의 단락 [0016] 참조)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4항에 부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분류 트리 (D1의 단락 [0098]-[0102] 참조), 및 인용문헌 D3의 구조방정식모형 (D3의 페이지 2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착안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5항 내지 제7항에 부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특징 (D1의 단락 [0086] 참조), 및 인용문헌 D3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간의 관계가 공분산 및 인과관계로 설정되고 AMOS를 이용하여 경로도형을 작성하며, 모형인증평가에서 경로계수의 표준오차가 매우 큰 경우를 고려하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는 특징 (D3의 페이지 8,12-13 참조)과 통계 분석 기술 분야에서 가설검정과 회귀분석에 이용되는 주지관용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착안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8항에 부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분류 트리 (D1의 단락 [0098], 도면 12 참조), 인용문헌 D2의 베이지안 네트워크 층의 각 노드간 인과관계 (D2의 단락 [0026],[0029] 참조), 및 인용문헌 D3의 노드와 화살표로 나타내는 특징 (D3의 페이지 3-4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착안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8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내지 D3의 결합에 의해서 자명하므로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1.1.3 종속항 제3항

청구항 제3항에 부가된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심박수, 위치, 현재지, 진행 방위 및 시각 (D1의 단락 [0022],[0048] 참조), 인용문헌 D2의 음성 정보 (D2의 단락 [0016] 참조), 및 인용문헌 D4의 심박수, VLF, LF, HF, 위도, 경도의 통계적인 변화량, 하루 동안 이동한 총 거리, 클러스터의 수, 이동 시간, 엔트로피 및 생활패턴의 규칙적인 정도 (D4의 페이지 250 참조)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착안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용문헌 D1, D2 및 D4는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사람과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인용문헌 D3는 경로분석과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1 내지 D4를 결합하여 청구항 제3항 발명을 도출하는 것은 자명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3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내지 D4의 결합에 의해서 자명하므로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2 청구항 제9항 내지 제16항

1.2.1 독립항 제9항

청구항 제9항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 제1항과 카테고리만 상이한 발명으로서 동일한 취지의 이유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9항은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2.2 종속항 제10항 내지 제16항

청구항 제10항 내지 제16항은 각각 청구항 제2항 내지 제8항과 비교해 볼 때, 발명의 카테고리만 상이할 뿐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0항 및 제12항 내지 제16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내지 D3의 결합에 의해서 자명하며, 청구항 제11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내지 D4의 결합에 의해서 자명하므로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6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